

건축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공사를 먼저 완료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허용하여 기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폐율)을 녹지지역에서는 모두 20퍼센트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에서는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녹지지역에서도 자연취약지구와 같이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건축된 곳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함

2. 주요골자

- 가.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허가받아 공사를 먼저 완료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허용함 (안 제18조 제1항)
- 나. 건폐율을 20퍼센트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에서는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함 (안 제47조 제1항)

建築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 제1항중 “建築物의 使用檢査를 申請”을 “建築物의 使用檢査 (棟別 使用檢査

査를 포함한다)를 申請”으로 한다.
第47條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綠地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區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第18條(建築物의 使用檢査) ① | 建築主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を 完了한 경우에는 完了한 날부터 7日 이내에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築物의 使用檢査를 申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工事監理者의 署名을 받아 申請하여야 한다. | 第18條(建築物의 使用檢査) ① | | |
| ②-⑤(생략) | | ②-⑤(현행과 같음) | | |
| 第47條(建蔽率) ① | 垜地面積에 대한 建築面積(垜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比率(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最大限度은 다음 各號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 | 第47條(建蔽率) ① | | |
| 1. 綠地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 | 1. 綠地地域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다만, 綠地地域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區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 | |
| 2. - 6. (생략) | | 2. - 6. (현행과 같음) | | |
| ② - ③ (생략) | | ② - ③(현행과 같음) | | |